전 학생 등교에 바빠진 광주 보건소들

17일간 코로나19 의심증세 학생 2465명·교직원 114명 찾아 검체 채취후 6시간 이동 금지에 북적…방역 현장 과부하 우려

광주지역 보건소가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 교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코 로나19'가 의심된다며 진료를 받으려는 학 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체를 채취한 경우 6시간 동안 다 른 곳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 에 보건소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8일 광주시와 5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고교 3학년생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0 일부터 지난 5일까지 17일 간 학생 2465 명과 교직원 114명이 코로나19 의심증세 로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구별로는 북구가 799명의 학생들 이 찾아 가장 많았고 서구 590명, 광산구 528명, 남구 293명, 동구 141명 등의 순 이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를 찾는 발길도 증가했다.

고 3 학생들만 등교한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동안 하루평균 79명(총 552명)이 보건소를 찾았지만 고 2와 중3. 초1~2·유치원생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는 일주일간 하루평균 165명(총 1157명)이 진료를 받았다.

고1·중2·초3~4학년까지 등교하기 시 작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건소 를 찾은 학생들 수는 하루평균 252명(총 756명)에 달했다. 지난 4일 하룻동안 찾 은 학생들만 282명이나 됐다.

보건소측은 8일부터 중학교 1학년과 초 등학교 5~6학년까지 전 학년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 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보건소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은 교육당국이 의심 증상을 보이 는 학생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내기

교육당국은 일선 초·중·고교에 지침을 내려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하고 있 는 실정이다.

로 한 방침 때문이다.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은 감염, 확산 우려가 커 감기・비염 등 단순 증상만 보여 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 를 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보건소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증상이 거의 없는 학생들도 보건소를 찾아 자칫 방역 현장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이 일단 검체 채취를 하면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최소 6시간 동안 다른 진 료를 볼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칫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학생들 기준 을 보다 세분화하는 게 무분별한 검사를 자제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 한 선제적 조치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검사가 우선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심 증상에 대한 신중한 자 가 진단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이 등교를 시작한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지난 달 고 3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의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 을 한 것은 3월 개학 예정일로부터 99일만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어유치원 1년 4개월 째 무단 폐쇄 광주교육청, 설립·운영자 고발 검토

광주교육청이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 고 무단으로 영어유치원을 폐쇄한 유명 사립 영어유치원 설립 운영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 월부터 1년 4개월째 무단으로 영어유치 원 문을 닫은 남구 모 영어유치원 설립·운 영자 A씨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 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건강 악화와 재정 어 려움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영어유치 원 폐쇄 인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A씨에게 영어유치 원 현금출납부 등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 했지만, A씨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 교육청이 폐쇄 인가신청을 반 려했는데도,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3월부

터 문을 닫았다. A씨는 "유치원 폐쇄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했고, 유치원 폐쇄인가는 기속 행위여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의무가 있는데 폐쇄 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최 근 2심에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처분은 교육청의 기속행위(법규재량)가 아닌 재 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교육 청 인가 없이 무단으로 폐쇄하면 유아교 육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 다"며 "해당 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폐쇄 절차를 밟도 록 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고발도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임금피크제 소송 휩싸인 광주환경공단

노조 "사측이 감액 비율 일방 결정…절차상 하자 무효"

광주환경공단 노조원들이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비율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 결 과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 노조원 273명이 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 송'을 제기한 데 따라 지난 5일 변론 기일 이 민사 9단독 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 행됐다.

공단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데 따라 이듬 해부터 공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 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 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조측은 그러나 당시 감액율과 관련, 추후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했음에도 사

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 을 들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소송을

노조측은 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직이 일반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도, 각종 수당(가족수당·자격증 수당 등) 을 인정받지 못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 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양측

주장을 파악한 뒤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

광주환경공단 노조 관계자는 "공무직 차별과 임금피크제 일방적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형량이 더 늘었네…단호해진 항소심

원심과 유・무죄 판단 같고 피해자와 합의 했더라도

광주지법 양형 판단 꼼꼼해져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피고인 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꼼꼼한 양형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을 내세워 형량을 늘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 판에 넘겨진 A (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남구 월산동 에서 면허없이 7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

2020타경

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 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인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에 있 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 르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장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반성하 는점,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점 등을 고려 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다르게 판단한

재판부는 또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 사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항소 심에서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B씨

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개월 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체납 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지 달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을 하지 않았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 맡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는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항소를 '이유없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달이라도 형 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를 한 B씨 입장에 서는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경우가 된

앞서, 형사 1부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

고 기획부동산 사기의 폐해를 알고도 버 젓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50명이 넘는 피해자와 전부 합의했음에도, 이들 일당들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 형량을 높여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가 담, 휴대전화와 OTP 카드를 교부한 혐의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서도 가자 위조 번호판을 제작해 2018년 7월까 지난달 재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2개월~ 6개월 더 늘려 선고했었다. 이렇다 보니 1심과 견줘 달라진 게 없지만 법정 구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형사사건 항소심을

> 형량이 높아진 데는 항소심 양형 판단 이 꼼꼼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형을 깎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항소하고 보자'는 항소 권 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만, 원심에 비해 혐의가 추가됐거나 유·무죄, 합의 여부 등에서 변화된 없는 점 을 들어 1심 재판부의 느슨한 법 적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출국금지 대상, 수사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해야"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 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 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19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헌법이 보장하 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 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 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 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 불복절차로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 하지 않은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만 출 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돼도 별도의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재의 관행을 개선해 금지 기간 만료 시 반드 시 해제통지가 이뤄지도록 하고,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 서 30일로 연장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 는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사건번호	물건 번호	그 소세지 및 면적 1 때 1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71968	1	서구 염화로45번길17, 106동 11층 1104호	아파트	44,333,000	지분매각,공유자
		[화정동,라인동산아파트] 59.85㎡[공유자		44,333,000	우선매수권해사1
		김진우지분5/15전부]			회로제한
2019타경 76277	1	남구 용대로131, 203동 2층 202호 59.31㎡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20타경 1583	1	서구 경열로65번길7-1, 2층 211호 83.68㎡	아파트	165,000,000	
				165,000,000	
2020타경 2005	1	북구 첨단연신로184, 101동 3층 304호 [신	아파트	430,000,000	현황조사보고일인
		용동,한양수자인리버뷰] 84.3957㎡		430,000,000	2020.3.17.기준관
					리비3백여만원이
					미납된상태
2020타경 60742	1	광산구 신창로161번길34, 311동 15층 1504	아파트	189,000,000	
		호[신창동,신창3차부영사랑으로]59.7480㎡		189,000,000	
2020타경 61967	1	북구 서하로106번길25, 105동 7층 706호 [아파트	279,000,000	
		용봉동,중흥에스-클래스] 84.8358㎡		279,000,000	
2020타경 62120	1	북구 서하로183번길45-6, 3층 314호 [오치	아파트	50,000,000	현황조사보고일인
		동,오치동갤럭스하임] 16.6579㎡		50,000,000	2020.4.23.기준관
					리비는2개월분이
					미납된상태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EF34		광산구 신창동 936 383㎡	대	406,127,540	일괄매각,제시외

광산구 신가매결길 71-8 1호 건평67.1㎡

제시외 창고 등 106.09㎡

단독주택

406,127,540 건물포함,목록1식

재된수목매각포함

사건번호 물건 최저매각가격 비고 소 재 지 및 면 적 [㎡] [단위:원] [대지/임야/전답] 광산구 대산동18-9 1322㎡[맹지이고현황묵]? 111,0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11,048,000 요 전.정확한위치및경계측량요.대나무식재되 18622 북구 일곡동 산185 13388㎜[공유자김성남 임야 140,553,000 지분매각,공유자 2019타경 지분133880분의22310전부] 140,553,000 우선매수권행사1 28,9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광산구 지산동 12-19 475㎡ 825 28,975,000 ⊆ 2020타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63-26 161㎡[현황전] 답 63,288,000 일괄매각,농지취 1910 동소 1050-15 132㎡[현황전] 63,288,000 득자격증명요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45-4 2571㎡[현황전 임야 4, 177,875 지분매각,공유자 공유자김다혜지분32분의4전부] 4,177,875 우선매수권행사1 2020타경 회로제한 3,407,250 물건번호1과비고 동소 45-8 1947㎡[공유자김다혜지분32분의 전 4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3,407,250 동일 [자동차,중기] 사용본거지:대구 달서구 월배로11길 9-16 자동차 1,000,000 보관장소:광산구 102동 605호[유천동,진천역화성파크리젠 1,000,000 산정동212[현대2 2020타경 시아파트] 등록번호:54버3889 차명:에쿠스 주차장] 연식:2002[시동불가,장기간노천방치,차체 및타이어일부손상] 사용본거지:전남 해남군 마산면 용소길 39 자동치 2020타경 15,500,000 구송암로124-3,송 [학의리] 등록번호:03어9508 차명:K5 연식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매각기일: 2020. 6. 23. [화] 10:00 매각결정기일: 2020. 6. 30. [화] 16:00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을 만비하기다 시급성공자국계곡을 제골한 단시[급등 보고시]를 단비해야 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하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긍지급기한까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 다. 소유권이전동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남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정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동독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크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영세서, 현황조사보고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교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출법장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불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각증명을 첨부한 위입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각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공대대.)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마락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2020. 6.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형준